

종합반 수강등록 및 할인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종합반 수강등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반 등록과정) 종합반 등록이 가능한 과정은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로 정하며, 이론과목 3과목을 동시에 수강등록하고 해당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에 한한다.

제3조(종합반 할인) 본 지침 제2조에 따라 온라인과정을 수강등록한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 할인금액은 총 수강료의 10%로 정한다.

제4조(추가혜택) 본 지침 제2조에 따라 수강등록하여 수업을 완료하고 문제풀이반을 등록할 시,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에는 문제풀이반 수강료의 50%를 오프라인 수강생의 경우에는 문제풀이반 수강료의 8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문제풀이반 할인혜택의 경우에는 총 2회로 제한된다.

제5조(수강기간) 본 지침 제2조에 따라 수강등록한 경우의 수강기간은 수강등록한 최초 과목의 개강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재수강 등록 및 할인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재수강 등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수강 등록 및 할인)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이 아닌 오프라인 정규이론 과정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과정별 홈페이지 개강안내문에 공지된 금액으로 정한다.

제3조(재수강 등록 제한) 본 지침 제2조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등록이 제한된다.

1. 해당과정 시험에 합격한 자
2. 전달교육을 목적으로 수강하려는 자
3. 기타 본원의 영업비밀 및 콘텐츠를 침해하려는 자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 수료기준 및 수료증발급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4조 3항에 따라 평생교육원(이하 “교육기관” 또는 “본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료기준 및 수료증 발급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환급 수강생 수료기준) 고용노동부 환급대상으로 수강등록한 수강생의 수료기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따른다.

제3조(학점은행제 수강생 수료기준) 학점은행제 대상으로 수강등록한 수강생의 수료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따른다.

제4조(일반 수강생 수료기준) 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 일반 수강생의 수료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동안 수업에 참석하여 모든 교보재를 수료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동안 수업에 일부 참석하지 않았거나 일부 교보재를 미수료한 경우에는 미수료이나, 교육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보재를 수료한 후 복습용 온라인 강의를 시청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8.4.2>

제5조(온라인 강의 수료기준) 본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등록한 수강생의 수료기준은 해당 과정의 진도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도율이란 실제 시청한 강의시간을 원래의 강의시간(즉, 1배수 강의시간)으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2018.4.2>

제6조(훈련과정 미수료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료증 발급) 본원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해당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료증을 발급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3조 2항에 따른다.

제8조(예외사항)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PMP(국제공인프로젝트관리사) 과정의 경우에는 시험응시 주관사인 PMI(프로젝트관리협회)에서 요구하는 시험응시 필수 교육시간인 35시간의 이수여부를 확인 후 영문수료증이 발급된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사물함 대여 및 운영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사물함 대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물함 대여 신청) 사물함 대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운영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사물함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보증금) 사물함 대여 시 보증금은 금일만원(₩10,000)이며, 사물함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환불된다.

제4조(이용료) 사물함 대여 시 이용료는 1개월에 금사천원(₩4,000), 2개월에 금팔천원(₩8,000), 3개월에 금일만원(₩10,000)이며,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제5조(대여기간) ① 과정별 수강생의 사물함 최대 대여기간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제15조에 따른 과정별 랩실 및 자습실 사용 유효기간과 같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수강생 본인의 사물을 모두 수거한 후 사물함 키를 반납해야 한다.

② 사물함 대여기간이 종료된 후 대여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물수거를 불이행 시 사물은 임의로 수거되며, 이후 사물함 대여신청은 불가 하다.

제6조(임의수거 및 폐기처리) 제5조 2항에 따라 임의로 수거된 사물은 본원에서 임시 보관하되, 임시 보관기간은 1개월이고, 임시 보관기간이 종료되면 폐기 처리 된다.

제7조(과태료) 대여된 사물함의 키를 분실하였거나 훼손시킨 경우의 과태료는 금일만원(₩10,000)으로 정한다.

제8조(귀중품 분실에 따른 책임) 사물함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를 어겨 귀중품이 분실된 경우 본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9조 1항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수강료 결재금액	수강 마일리지 적립	수강 마일리지 사용
일반적인 경우	가능	가능
10%이하 할인을 받은 경우	가능	불가
10%초과 할인을 받은 경우	불가	불가

제3조(추가 마일리지 적립)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9조 1항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수 있다.

구분	마일리지 적립액	비고
신규수강생 추천 시	10,000	추천인에게 적립
신규수강생 년간 5명 추천 시	50,000	1년 내에 5명 추천 시 추천인에게 적립(단, 5명 미만일 경우 해당 없음)
홈페이지에 합격후기 또는 취업후기를 게재할 경우	10,000	
Best(최우수) 후기로 선정될 경우	50,000	

<2018.4.2>

제4조(CIA합격축하 마일리지 적립) ① 제3조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외에도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과정의 수강생이 개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과목을 수강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 본원에 합격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십만(100,000)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수 있다. 단, 1년 이내의 합격기준은 최초 수강한 과목의 개강일로부터 1년 이내를 의미한다.

② 1항의 합격증빙서류는 수강생이 CIA 국제본부로부터 수신한 합격결과 이메일 사본 또는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신하는 비공식결과 문서의 사본으로 정한다.

제5조(양도불가) 적립된 마일리지는 수강생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수강상품권 발행 및 사용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수강상품권 발행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상품권 발행) 본원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본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수강등록 할 수 있는 선 결제된 형태의 수강상품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제3조(수강철회 및 반환 불가) 수강상품권으로 수강등록한 경우에는 개강일 이후라도 수강철회를 할 수 없으며, 이미 발행된 수강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 및 환불되지 않는다.

제4조(유효기간내의 사용) 수강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용도의 제한) 발행된 수강상품권은 교육과정 수강 등록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시험접수나 시험접수대행, 고용보험환급과정의 환급대상 수강료 결제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분실, 도난 및 훼손) 수강상품권이 분실, 도난 및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등록이 불가하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강의 운영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온라인 강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과정 및 수강료) 본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의 운영과정과 수강료는 별표 제1호 온라인 강의 운영과정 및 수강료와 같다.

제3조(수강 유효기간 및 시청시간) 과정별 수강유효기간과 시청시간은 별표 제2호 온라인 강의 과정별 수강 유효기간 및 시청시간과 같다.

제4조(이용기기의 등록 및 제한) ① 수강생은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기 위해 본원 홈페이지 수강아이디로 PC 및 모바일 기기를 각 1대씩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기기는 고유의 PID값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PC 또는 모바일 기기의 고장으로 등록된 기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PID값을 초기화 할 수 있다.

③ 2항에 의해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를 교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 구매영수증 등을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보제 배송) ① 교보제 배송은 수강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괄 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비용은 배송지역이 국내일 경우 본원이 부담하며, 해외일 경우에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②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교보제가 반송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 배송비용과 훼손된 교보제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제6조(수강취소 및 환불) ① 수강생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원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한 수강취소 및 환불기준은 별표 제3호 온라인 강의 수강취소 및 환불기준에 따른다.

제7조(강의시청의 모니터링, 계약의 해지) ① 수강생이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동안 모든 상황은 모니터링되며, 본원의 허락없이 동영상 캡처(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또는 캡처(녹화 또는 녹음)하려는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타인과 홈페이지 수강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등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2조 1항 및 제23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고지없이 온라인 강의 시청이 즉각 중지된다.

② 본원은 1항에 따라 해당 수강생에게 온라인 강의 시청이 중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잔여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또한, 본원에 금전적인 혹은 그에 준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온라인 강의 운영과정 및 수강료

구분	과정명	수강료 ⁽¹⁾
정규이론반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667,500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592,5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Part I	₩376,0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Part II	₩352,0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Part III	₩472,0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종합반	₩1,080,000
	PMP(국제공인프로젝트관리전문가)	₩448,000
	정보시스템감리사	₩693,000
	정보관리기술사	₩640,000
	ITIL Foundation	₩390,000
	CPPG(개인정보관리사)	₩245,000
	정보보안기사 필기	₩290,000
	정보보안기사 실기	₩250,000
	DAP(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483,000
	CPE/PDU	₩133,000
Review & 문제풀이반 ^(주2)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185,000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120,0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Part I	₩115,0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Part II	₩115,0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Part III	₩135,000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종합반	₩182,500
	PMP(국제공인프로젝트관리전문가)	₩72,000
	정보시스템감리사 Review & 실전모의고사 및 문제풀이반	비수강생 ₩182,000 ₩343,000
	정보시스템감리사 문제집 풀이반	비수강생 ₩126,000 ₩238,000

주1) 수강료는 본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수강료는 홈페이지 개강안내 페이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2) Review & 문제풀이반의 경우 해당과정 정규이론반 수강생에 한하여 수강등록이 가능하다. 단, 정보시스템감리사 Review & 실전모의고사 및 문제풀이반과 문제집 풀이반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감리사 정규이론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수강등록이 가능하다.

[별표 제2호] 온라인 강의 과정별 수강 유효기간 및 시청시간

구분		수강 유효기간	시청시간
CBT 시험대비 과정	CISA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주1))	2배수 ^(주2) (불합격 시 1배수 추가 제공)
	CISSP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IA Part I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IA Part II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IA Part III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IA 종합반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12개월 (불합격 시 6개월 연장)	
	PMP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3배수 (불합격 시 배수 추가 제공 없음)
	ITIL Foundation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PBT 시험대비 과정	감리사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12개월 (불합격 시 6개월 연장)	3배수 (불합격 시 배수 추가 제공 없음)
	기술사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6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PPG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정보보안기사 필기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6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정보보안기사 실기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6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DAP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Review & 문제풀이 ^(주3)	CBT시험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1개월	2배수
	PBT시험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1개월	2배수
기타	CPE/PDU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2개월	3배수

주1) 수강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경우 불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 또는 다음 시험일이 기재된 시험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2) 시청시간 2배수라함은 전체 강의시간에 2를 곱한 시간만큼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음을 말함.

주3) 감리사 Review & 실전모의고사 및 문제풀이반과 감리사 문제집풀이반의 경우 수강 유효기간은 수강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

[별표 제3호] 온라인 강의 수강취소 및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진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강생 사유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교보재 배송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
	교보재 배송 후부터 온라인 강의 시청 전까지	납부한 수강료의 10% 위약금을 제외한 해당액 반환
	총 진도율이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2/3 해당액
	총 진도율이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1/2 해당액
	총 진도율이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총 진도율과 상관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총 강의시간의 3배수 시간을 모두 시청한 경우	수강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p>1. 교보재를 지급받은 경우 교보재를 반납해야 하고, 교보재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하였으나 교보재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된 해당 교보재비를 추가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반환 됨.</p> <p>2. 총 진도율이란 실제 시청한 강의시간을 원래의 강의시간(즉, 1배수 강의시간)으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한 값을 말하며, 복습을 위해 반복시청한 강의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p> <p>3. 불합격하여 수강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강취소 불가함.</p> <p>4. 종합반의 경우 단과반 수강료로 계산하여 과목별 수강료를 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이 환불되며, 이 경우 과목별 수강료는 강좌안내자료 또는 홈페이지 개강안내에 명시된 단과반 수강료 임.</p> <p>5. 본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강생의 사유로 인한 환불신청일 경우 환불로 발생하는 카드취소 수수료, 송금 및 이체수수료는 수강생이 부담.</p>		

복습용 온라인 강의 서비스 지원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8. 6.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복습용 온라인 강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과정) 복습용 온라인 강의 서비스는 대표과정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표과정이라 함은 해당시험을 대비로 진행된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편집된 것을 선별하여 지정한 것으로, 수강생 본인이 오프라인 강의로 수강한 해당 강의가 대표과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복습 유효기간 및 시청시간) 복습용 온라인 강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과 시청시간은 별표 제1호 복습용 온라인 강의 서비스 유효기간 및 시청시간과 같다.

제4조(재수강자의 복습 유효기간 및 시청시간) 정규이론반 재수강자의 경우 복습용 온라인 강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별표 제1호 복습용 온라인 강의 서비스 유효기간과 같으며, 시청시간은 CBT시험대비과정의 경우에는 1배수가 제공되며(단, PMP과정과 ITIL Foundaiton과정은 1.5배수 제공), PBT시험대비과정의 경우에는 1.5배수가 제공되고, 불합격시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추가 배수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

제5조(이용기기의 등록 및 제한) ① 수강생은 복습용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기 위해 본원 홈페이지 수강아이디로 PC 및 모바일 기기를 각 1대씩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기기는 고유의 PID값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PC 또는 모바일 기기의 고장으로 등록된 기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PID값을 초기화 할 수 있다.

③ 2항에 의해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를 교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 구매영수증 등을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강의시청의 모니터링, 계약의 해지) ① 수강생이 복습용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동안 모든 상황은 모니터링되며, 본원의 허락없이 동영상 캡처(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캡처(녹화 또는 녹음)하려는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과 홈페이지 수강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등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2조 1항 및 제23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고지없이 복습용 온라인 강의 시청이 즉각 중지된다.

② 본원은 1항에 따라 해당 수강생에게 온라인 강의 시청이 중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잔여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또한, 본원에 금전적인 혹은 그에 준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수강생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2018. 4. 2>

이 지침은 2018. 4.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8>

이 지침은 2018. 6. 18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복습용 온라인 강의 서비스 유효기간 및 시청시간

구분		수강 유효기간	시청시간
CBT 시험대비 과정	CISA	개강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주1))	2배수 ^(주2) (불합격 시 1배수 추가 제공)
	CISSP	개강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IA Part I	개강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IA Part II	개강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CIA Part III	개강일로부터 4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PMP	개강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3배수 (불합격 시 배수 추가 제공 없음)
	ITIL Foundation	개강일로부터 3개월 (불합격 시 3개월 연장)	
PBT 시험대비 과정	감리사	개강일로부터 해당 시험일까지 (불합격 시 그 다음 시험일까지)	3배수 (불합격 시 배수 추가 제공 없음)
	기술사		
	CPPG		
	정보보안기사 필기		
	정보보안기사 실기		
	DAP		
Review & 문제풀이 ^(주3)	CBT시험	개강일로부터 1개월	2배수
	PBT시험	개강일로부터 해당 시험일까지	2배수
기타	CPE/PDU	개강일로부터 2개월	3배수

주1) 복습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경우 불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 또는 다음 시험일이 기재된 시험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2) 시청시간 2배수라함은 전체 강의시간에 2를 곱한 시간만큼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음을 말함.

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5. 1. 1.

개정 2016. 12.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19조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19조 1항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수강료 결제금액	수강 마일리지 적립	수강 마일리지 사용
일반적인 경우	가능	가능
10%이하 할인을 받은 경우	가능	불가
10%초과 할인을 받은 경우	불가	불가

제3조(추가 마일리지 적립)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19조 1항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수 있다.

구분	마일리지 적립액	비고
신규수강생 추천 시	10,000	추천인에게 적립
신규수강생 년간 5명 추천 시	50,000	1년 내에 5명 추천 시 추천인에게 적립(단, 5명 미만일 경우 해당 없음)
수강료 현금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시	결제금액의 2% 추가적립	별도 제한 없음, 모두 실 결제금액 기준으로 추가 적립
신규수강생 3명이상 동시 동일과정 등록 시	각 결제금액의 5% 추가적립	동일기수 등록 시에만 적용되며, 3명중 1명이라도 취소 시 마일리지는 모두 반환
홈페이지에 합격후기 또는 취업후기를 게재할 경우	10,000	
Best(최우수) 후기로 선정될 경우	50,000	

제4조(CIA합격축하 마일리지 적립) ① 제3조에 따른 수강 마일리지 외에도 CIA(국제공인내부감사사) 과정의 수강생이 개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과목을 수강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 본원에 합격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십만(100,000)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수 있다. 단, 1년 이내의 합격기

준은 최초 수강한 과목의 개강일로부터 1년 이내를 의미한다.<신설 2015. 1. 1>

② 1항의 합격증빙서류는 수강생이 CIA 국제본부로부터 수신한 합격결과 이메일 사본 또는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신하는 비공식결과 문서의 사본으로 정한다.

제5조(양도불가) 적립된 마일리지는 수강생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

이 지침은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

이 지침은 2016. 12. 1 부터 시행한다.

수강상품권 발행 및 사용 지침

제정 2011. 3. 23.

개정 2016. 12.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20조에 따른 수강상품권 발행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상품권 발행) 본원은 라이지움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수강등록 할 수 있는 선 결제된 형태의 수강상품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제3조(수강철회 및 반환 불가) 수강상품권으로 수강등록한 경우에는 개강일 이후라도 수강철회를 할 수 없으며, 이미 발행된 수강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 및 환불되지 않는다.

제4조(유효기간내의 사용) 수강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용도의 제한) 발행된 수강상품권은 교육과정 수강 등록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시험접수나 시험접수대행, 고용보험환급과정의 등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분실, 도난 및 훼손) 수강상품권이 분실, 도난 및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등록이 불가하다.

부 칙<2011. 3. 23>

이 지침은 2011.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

이 지침은 2016. 12. 1 부터 시행한다.